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21.(금))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2.21 포함) 중선통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인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상호	(주)영우디앤씨	동부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51, 902호 (역삼동, 프라자654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법인등록번호	110111-3583253	110111-0005002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상호	(주)서던디앤씨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순우전기엔지니어링
금액	2,040,063,410원	154,000,000원	561,165,300원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별표	당첨자 서류제출 (자격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5년 3월 4일(화)	2025년 3월 5일(수)	2025년 3월 6일(목)	2025년 3월 12일(수)	2025년 3월 15일(토) ~ 3월 18일(화)	2025년 3월 24일(월) ~ 3월 26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09:00 ~ 17:30)	인터넷 청약(09:00 ~ 17:30)	인터넷 청약(09:00 ~ 17:30)	개별초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접수(10:00 ~ 16:00)	방문계약(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견본주택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0-2번지)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9238호(2025.02.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4개동 총 3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36세대, 다자녀가구 55세대, 신혼부부 65세대, 노부모양 11세대, 생애최초 32세대 포함]
 ■ 입주시기: 2028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하차주차정동)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양	생애 최초	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민영주택	2025000037	01	084.8878A	84A	84.8878	26,5204	111,4082	60,3711	171,7793	27,7052	101	10	15	18	3	9	55	46	4				
		02	084.9381B	84B	84.9381	26,8961	111,8342	60,4069	172,2411	27,7216	68	7	10	12	2	6	37	31	2				
		03	084.7812C	84C	84.7812	27,5223	112,3035	60,2953	172,5988	27,6704	131	13	20	23	4	11	71	60	4				
		04	084.9832D	84D	84.9832	29,2122	114,1954	60,4390	174,6344	27,7363	68	6	10	12	2	6	36	32	2				
					합계					368	36	55	65	11	32	199	169	12					

주택형 (약식표기)	층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25.04.21.	2025.08.20.	2026.02.20.	2026.08.20.	2027.02.22.	2027.07.20.	2027.11.22.	입주시				
84A	1층	4	699,000,000	10,000,000	24,95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44,650,000		
	2층	4	723,000,000	10,000,000	26,15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253,050,000			
	3~4층	8	739,000,000	10,000,000	26,95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258,650,000			
	5~9층	20	763,000,000	10,000,000	28,15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267,050,000			
	10층 이상	68	787,000,000	10,000,000	29,35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275,450,000			
84B	2층	2	729,000,000	10,000,000	26,45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255,150,000			
	3~4층	4	745,000,000	10,000,000	27,25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60,750,000			
	5~9층	10	769,000,000	10,000,000	28,45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269,150,000			
	10층 이상	52	793,000,000	10,000,000	29,65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277,550,000			
	84C	1층	4	698,000,000	10,000,000	24,9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244,300,000		
2층		4	722,000,000	10,000,000	26,1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252,700,000			
3~4층		8	738,000,000	10,000,000	26,9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58,300,000			
5~9층		20	762,000,000	10,000,000	28,1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266,700,000			
10층 이상		95	786,000,000	10,000,000	29,3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275,100,000			
84D	2층	2	653,000,000	10,000,000	22,65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228,550,000			
	3~4층	4	669,000,000	10,000,000	23,45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234,150,000			
	5~9층	10	693,000,000	10,000,000	24,65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42,550,000			
	10층 이상	52	717,000,000	10,000,000	25,85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250,950,000			

구분	내 용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3에 따라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상 ·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별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별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별표일이 빠른 당첨권은 유효하며, 당첨자별표일이 늦은 당첨권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당첨자별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권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권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td> </tr> <tr> <td>부부 및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별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별표일이 빠른 당첨권은 유효하며, 당첨자별표일이 늦은 당첨권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별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권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권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및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별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별표일이 빠른 당첨권은 유효하며, 당첨자별표일이 늦은 당첨권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별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권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권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및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양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구분	내 용
생애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추천의 추천 및 인정을 받은 본인,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청약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 호배정에 제외되며 계약불가]

구분	내 용
생애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기준 ▶ 거주지역 ▶ 배정기준 ▶ 미성년 자녀 수 ▶ 청약지역 연령 ▶ 주점 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표'에 의한 접수 순에 따라 대지를 선정한다. ※ 동일접수료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구분	내 용																								
생애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가간이 7년 이내(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당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공급비율</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상·우선공급</td> <td>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하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td> </tr> <tr> <td>2단계</td> <td>신상·일반공급</td> <td>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td> <td>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0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td> <td>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잔여 세대</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40% 초과하나 (맞벌이인 경우 160% 초과), 부당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⑤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단계	소득구분	공급비율	내 용	1단계	신상·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하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2단계	신상·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0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	5단계	추첨공급	잔여 세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40% 초과하나 (맞벌이인 경우 160% 초과), 부당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공급비율	내 용																						
1단계	신상·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하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2단계	신상·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0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																						
5단계	추첨공급	잔여 세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40% 초과하나 (맞벌이인 경우 160% 초과), 부당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구분	내 용						
②순위	<table border="1"> <thead> <tr> <th>순 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가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순 위	내 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가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순 위	내 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가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아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아산시 제외)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자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가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며,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며,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 · 입양) 입주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피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구분	내 용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2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를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하며)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라도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과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본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제과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무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무의무)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0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당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공급비율</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상·우선공급</td> <td>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상·일반공급</td> <td>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td> <td>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td> <td>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잔여 세대</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60% 초과하나, 부당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60% 이하이거나, 부당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공급비율	내 용	1단계	신상·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상·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잔여 세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60% 초과하나, 부당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60% 이하이거나, 부당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공급비율	내 용																						
1단계	신상·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상·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잔여 세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60% 초과하나, 부당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160% 이하이거나, 부당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 · 입양) 입주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피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구분	내 용
노부모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1세대	